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8호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대안교육지원 및 상담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27,
FAX 042-600-5039, E-mail : kimcs46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를 위하여 대안학교를 육성하고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2. 보호 및 교육지원 방향 및 추진 목표
3.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담 및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립하거나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보호단체 또는 대안교육지원 관련 기관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